

#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16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타 지자체 사례 등 현실에 맞게 증액함으로써 자문 사항의 적극적 회신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증액(안 제4조)
  - 자문실적이 많거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액 한도 증액 : (현행) 월 10만원 이내 추가 지급 → (개정) 월 50만원 이내 추가 지급
- 나. 자문실적부 비치 소관 부서장 명칭 변경(안 제7조)
- 다. 그 밖에 숫자의 표기 및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3. 19. ~ 2025. 4. 8.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법무부 국가송무과

나) 경 기 도 : 법무담당관

##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00,000원” 을 “30만원” 으로, “100,000원” 을 “50만원”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인정하여 부의 하는” 을 “인정하는” 으로 한다.

제7조 중 “정책기획과장” 을 “고문변호사 운영 소관부서장” 으로, “별지서식에 의한” 을 “별지서식의” 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문 의뢰한 실적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예산법무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팀장 직위·성명	소송지원팀장 장은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김나영(☎204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소송비용등) ① · ② (생략)</p> <p>③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u>300,000원</u>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u>100,000원</u>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u></p> <p>제7조(자문 실적부 비치) <u>정책기획과장</u>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u>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u>를 비치하고 월별로</p>	<p>제4조 (소송비용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30만원</u> ----- ----- ----- ----- ----- ----- ----- ----- ----- <u>50만원</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인정하는</u> ----- -----</p> <p>제7조(자문 실적부 비치) <u>고문변호사 운영 소관부서장</u>----- ----- <u>별지서식의</u> ----- -----</p>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  
수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

-----

범위-----

-----

-----.

###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4건 이하: 30만원
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 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 원씩 월 50만 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회신 실적은 시장이 요청한 자문회신 요구기한(8근무시간 이상으로 한다)까지 회신한 건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자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제2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23.5.3.>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김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2009.12.28., 2018.2.9. 2020.7.1.>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9.,2023.5.3.)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18.2.9)
  - 가. 불변기일 경과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고문으로서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신설 2014.4.16.)
6.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입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을 때(신설 2014.4.16.)
7.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을 때(신설 2014.4.16.)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4.16.)

⑤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 비위행위자는 위촉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4.16.)

⑥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4.16.)

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2.4.6.)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입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6.)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4.16.)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형사피의(고소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형사 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28)

4.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3.>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신설 2014.4.16.)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입,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22.4.6.]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 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7.1.,2023.5.3.>(전문개정 2001. 7. 5)

1.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②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3.5.3.>

③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3)

④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행정심판 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24)

⑤ 제1항 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결과금으로 본다. (개정 2006.3.13, 2012.5.24.,2023.5.3.)

**제5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거나 민사·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김포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지급수준 또는 수입변호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2018.2.9.,2023.5.3.)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9.7.26.>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집행이나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민사·형사피소(고소 등)사건 및 공소 제기된 소송 <개정 2018.2.9., 2020.7.1.>

5.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5.3.>

6.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개정2018.2.9)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김포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지원결정 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1. 민사·형사피소(고소 등)된 피의 사실이 적극행정이나 직무수행과 밀접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0.7.1.,2023.5.3.>

2. 제1호 및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 제기하는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을 수사·조사 단계부터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 한도 및 지원여부 등은 김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처분 포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본조신설 2009.12.28.]

**제6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입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8.]

**제7조(자문 실적부 비치)** 정책기획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5, 2005.7.18, 2007.4.9, 2012.2.1, 2017.3.2, 2018.9.3, 2024.3.27.,2024.12.31.)

**제8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입 사건별로 별표 3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

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6.]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입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16.]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제7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50만원 이내 추가비용 지급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 : 미작성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과장 조은정 팀장 장은길